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 등〉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86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개선(안 제48조의2 제5항 등)	2
2.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안 제48조의7 신설 등)	12
3.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48조의8 신설)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22.

다. 회 부 일 : 2025.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개선(안 제48조의2 제5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제출한 침해사고 관련 정보(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8조의2 제5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긴급하게 전달 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고·경보를 방송·송신·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7항).
-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제1항 및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함(제6항 및 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 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u><신설></u>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 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 를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침해사고의 예보·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 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음성 송</u>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u>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u>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u>	<u>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 ----- <u>피해</u> <u>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u> 2. <u>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u> ② ----- ----- ----- ----- ----- <u>방지와 이용자</u> <u>피해의 구제를</u> ----- ----- -----.

현행	개정안
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민간분야 침해사고 신고는 2022년 1,142건, 2023년 2,536건, 2024년 1,887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민간분야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5.
DDoS 공격	123	122	213	285	167
악성코드 감염·유포	234	347	300	229	89
시스템 해킹	283	673	764	1,373	503
계	640	1,142	2,536	1,887	759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이에 더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 국민에 대한 침해사고 예보·경보,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일반 공개 금지(안 제48조의2 제5항)

- 안 제48조의2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침해사고 관련 정보(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³⁾를 제공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1)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나 보안 취약점 등이 노출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민·관합동조사단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응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제3자 제공 및 일반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 대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공개하는 경우로 금지행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침해사고 관련 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안보 목적상 국가정보원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조건하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침해사고 예고·경보 발송 요청
(안 제48조의2 제7항)

- 안 제48조의2 제7항은 침해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고 예고·경보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고·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⁴⁾,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발생 시 대국민 긴급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안 제48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안 제48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4)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관련 규정들은 침해사고의 신고, 원인 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 등 침해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5)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6)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약금 면제 등을 규정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⁷⁾,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율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의안번호 제2210170호(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2210314호(전용기의원 대표발의)

8) 의안번호 제2210762호(이해민의원 대표발의)

2.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안 제48조의7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 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함(안 제48조의7 제1항).
 -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는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시정·보완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2항).
 - 제48조의7 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호의5)
 - 제48조의7 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호의6)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u> ⑤ <u>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u>제4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4의6. <u>제4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안 제48조의7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보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표준안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침해사고를 예방·대응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⁹⁾.

9)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해당 지침에는 침해사고 대응체계, 대응방법 및 절차 등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¹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시행·개선하도록 함¹¹⁾.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전기통신사업자와 주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함¹²⁾.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0)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11)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12)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해당 인증기준에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취약점 점검
 - 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¹³⁾.
- 따라서 유사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 혼란이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국가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조치를 두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¹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침해 행위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

에 해당하는 자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14)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해당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현재 국가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의 경우 이미 침해사고 관리·대응 지침의 작성과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보통신망이 있다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추가 지정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접속망과 이동전화(무선인터넷망)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음¹⁷⁾.

15)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1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방송통신위원회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서비스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매뉴얼 검토와 운용 실태의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인력 등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이와 별개로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표준화된 매뉴얼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 변화와 새로운 보안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매뉴얼 작성·제출 의무자를 구체화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48조의8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관련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8조의8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의 징수·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현행	개정안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¹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일종임.
- 안 제48조의8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 다만,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기능이 유사한바, 이미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⁹⁾.

18)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19)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또한, 「행정기본법」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²⁰⁾,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자료제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타 입법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국세채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상 규정²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력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0)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21)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에서 이미 침해사고 자료제출 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하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